

보도자료

2010년 1월 29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전파방송관리과 오용수과장(2250) 나. 비상계획담당관 안성훈과장(1810)
다. 시청자권익증진과 김창현과장(2690) 라. 편성평가정책과 최정규과장(2350)

[보고안건]

가. 편성평가정책과 최정규과장(2350) 나.~라.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2410)

2010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위성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이 방송법 제9조(방송사업 허가) 및 전파법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한 제18위성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개설허가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하기로 의결함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평시에 방송통신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2010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 방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시청자 권익을 위한 2010년도 5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 2009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등을 선정·시상하기 위하여 「20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에 관한 사항

-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라.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시행령(제4조제2항)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함
- 부수 인증기관은 일간신문이 제출한 부수자료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실사를 하고 인증
-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를 실사하고 인증

※ 부수 인증 가능기관 현황 : (사)한국ABC협회, 한국리서치 등

[첨부1]

2010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대상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대상	'10년 예산	세부 내역		비고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 근권 보장	2,416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1,326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680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300	
		장애인 기획사업 지원	70	
		방송수신기 이용실태 점검	40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3,000	자막방송 제작 지원	1,870	
		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원	650	
		수화방송 제작 지원	350	
		장애인방송물 보급	100	
		실태조사	30	
○ 미디어교육 지원	500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120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380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2,500	KBS	416	
		지역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SO)	1,584	
		위성방송(PP)	500	
○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285	방송환경 조사 및 시청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등		
합 계	8,701			

[첨부2]

2010년 방송대상 분야별 시상 계획

시상 분야	시상 부문		시상 편수/ 개인 또는 단체	시상금	비고
프로그램 분야	대 상		1편	2천만원	
	우수상	창의 발전 프로그램 부문	2편	편당 5백만원	
		사회 공헌 프로그램 부문	2편	편당 5백만원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부문	2편	편당 5백만원	
		지역 발전 프로그램 부문	2편	편당 5백만원	
		뉴미디어 프로그램 부문	2편	편당 5백만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부문	2편	편당 5백만원	
소 계			13편	8천만원	
특별상 분야	공로상		1인 또는 1개 단체	1천만원	
시상금 합계				9천만원	